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‘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’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 5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